

의안번호	2205986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B5454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조건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4,200만원, 2030년 13억 4,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4억 6,100만원(연평균 12억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18	18	18	18	18	92	18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안 제10조)	306	312	318	325	331	1,592	318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안 제11조)	918	936	955	974	994	4,777	955
합계	1,242	1,267	1,292	1,317	1,343	6,461	1,292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조성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4. 목조건축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기준 혁신에 관한 사항 5. 목조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목조건축 관련 표준화를 통한 설계 및 시공 기술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목조건축물의 조성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목조건축 정책협 의체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협의의 등 목조건축과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추천인사 10명과 산림청 추천인사 10명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 협의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기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목조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2항) 1.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2.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연구 3. 목재제품 산업 육성과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목조건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6.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조건축 지원사업 7. 목조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저장 효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관련 출판·홍보 사업 9. 기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리모델링 관련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 (목조건축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술 기준 혁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모듈을 기반으로 목조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전문인력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및 전문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4조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16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과 도시 기반 조성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지역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이하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 조성 시에 기술지원 및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7조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이 활성화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1. 목조건축물을 위한 정책 수립 2. 목조건축의 설계 및 공사 수행 및 기술력 강화 3. 목조건축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 4. 건축용 목재제품의 생산·가공·판매·유통·이용 5. 건축용 목재제품의 성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6.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7. 그밖에 목조건축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10	안 제18조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목조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목조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국가기관등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의 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9조 (목조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은 목조주택의 건축분쟁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와 공사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고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0조 (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와 목조주택 보급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의 규모, 형태 등이 담긴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표준설계도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목조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통해 매년 목조주택을 위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2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성, 대체성, 이용률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 너비, 길이 등에 대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건축용 목재제품 표준화에 필요한 제품과 표준화의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23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26조 (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현행법과 제정법 조문 비교

- 제정안 중 다음 [표 2]와 같이 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¹⁾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시행중인 조문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표

연번	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안 제16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 조성)	• 제38조(재정지원) － 산림청: 목재산업육성(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 － 내용: 지역목재를 활용한 콘크리트 도시의 건축, 거리 및 생활환경 전환 <table><tr><th>(단위: 백만원)</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td><td>4,806</td><td>6,938</td><td>6,945</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산림청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4,806	6,938	6,945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4,806	6,938	6,945							
2	안 제17조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38조(재정지원) － 산림청 : 목재산업육성(국산 목조건축 보급 확산) －내용: 목조건축을 위한 DB 구축 및 품셈 제작 등 <table><tr><th>(단위: 백만원)</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국산 목조건축 보급확산</td><td>－</td><td>1,000</td><td>1,00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산림청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국산 목조건축 보급확산	－	1,000	1,000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국산 목조건축 보급확산	－	1,000	1,000							
3	안 제18조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38조(재정지원) －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 내용: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 조성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번	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6,700	11,550	13,250
자료: 국토교통부, 산림청 제출자료					

□ 상기 [표 2]의 조문을 제외하고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조문 현황과 추계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 조문별 비용추계현황 및 추계 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추계사유
1	안 제5조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의 수립)	×	• (제3호)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한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책의 내용이 제정안의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되는 등 관련한 사업별 구체적 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6조 (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의 설치)	○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3	안 제7조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용 추산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확정적이어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9조 (목조건축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술기준 혁신)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시행하게 될 기술개발의 지원 기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10조 (전문인력양성)	○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6	안 제11조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	○	• 산림청이 제출한 유사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7	안 제14조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	• (제3호) 목조건축 산업 규모의 성장 추이에 따라 목재이용 현황조사의 범위, 업무지침 및 표준설계도 고시 등이 결정될 사항으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 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추계사유
8	안 제19조 (목조주택)		음
9	안 제20조 (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10	안 제22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	• (제3호) 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고시와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방법 등은 건축용 목재제품 시장상황, 활용성, 대체성, 이용률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시점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23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12	안 제26조 (조세감면)	×	• (제3호)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조세감면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해당 세부담 주체별 과세표준, 연도별 소득, 세유형별 조세감면율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²⁾
-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목조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정

- 제정안에서 목조건축 정책협의체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추천인사 10명과 산림청 추천인사 10명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 협의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국토교통부 내 운영중인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사위원회(국가지명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공무원 위원 11인, 민간위원 9인, 1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가정하여 협의체 운영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국가지명위원회: 공무원 10인, 민간위원 10인, 1개 분과위원회 운영
 - (유사사례) 수도권정비위원회: 공무원 12인, 민간위원 7인, 1개 분과위원회 운영
 - 공무원위원 11인, 민간위원 9인, 본회의 평균 4회, 분과위원회 평균 5회로 가정

[표 4] 유사 위원회 운영현황

구분	국가지명위원회		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분과위원회		본회의	분과위원회
2022	7	4	2022	3	4
2023	6	5	2023	1	5
2024	6	5	2024	3	7
평균	6	5	평균	2	5

자료: 국토교통부 위원회 활동내역서(2024. 4분기 기준)

□ 추계항목별 근거 및 방법

- 정책협의체 운영비용은 연간회의일수에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정
- 위원수: 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본회의 9인, 분과위원 5인으로 가정

- 유사사례의 인원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은 9인으로, 본회의 9인, 분과위원은 본회의 참석인원의 1/2 수준인 5인으로 가정함
- 분과위원회는 1개 분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본위원회 위원의 1/2 수준(5인)으로 가정함
- 개최일수: 본위원회 평균 4회, 분과위원회 평균 5회로 가정
 - 개최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평균 개최일수를 참고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³⁾,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협의 등 목조건축과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5]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수	본위원회(a)	9	9	9	9	9	—
	분과위원회(b)	5	5	5	5	5	—
개회일수	본회의(c)	4	4	4	4	4	—
	분과위원회(d)	5	5	5	5	5	—
위원수당(e)		0.3	0.3	0.3	0.3	0.3	—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a×c×e + b×d×e)		18	18	18	18	18	92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기획재정부(2024)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나. 전문인력 양성(안 제10조)

-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교육 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 사업의 내역사업 내 건축 관련 학생,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을 참고함
 - 동 사업은 정책개념부터 단계별 심화학습으로 구성되며, 수도권 외 지방 건축업계 종사자, 학생을 위한 권역별 대면 강의로서 2025년 기준 연간 15회 시행⁴⁾을 계획 중이며, 회당 지원비용은 2천만원
 -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6]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Skill-up)교육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사용내역	적용단가	기준	단위	금액(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3,700,000	1	인	13,100,000
	연구원	2,800,000	2	인	
	연구보조원	1,900,000	2	인	
강사료	교육강사	400,000	8	시간	3,200,000
임차료	교육장소	1,500,000	1	회	1,500,000
책자	교육자료	30,000	50	권	1,500,000
기타경비	국내여비	200,000	1	회	700,000
	회의비(다과 등)	200,000	1	회	
	물품구입비(사무용품 등)	300,000	1	회	
총계	-				20,000,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4) 제로에너지건축 교육운영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계획	16회	16회	15회
산출근거	전문가 양성 : 12회 실무자 양성 : 4회	전문가 양성 : 12회 실무자 양성 : 4회	전문가 양성 : 11회 실무자 양성 : 4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7]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교육횟수(a)	15	15	15	15	15	—
지원단가(b)	20.4	20.8	21.2	21.6	22.1	—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a×b)	306	312	318	325	331	1,592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목조건축 교육 활성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목조건축 관련 대학원 등을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시점에서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 지정 수와 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상하기 어려워, 산림청이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을 유사사례로 참고함 ([참고자료])
 - 동 사업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학원의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정학교 1개교당 연간 2.25억원의 예산을 지원(2025년 2개교 지원, 지원액 총 4.5억원, 세부내역 참고)

- (탄소흡수원 관련 교과목 운영) 300백만원(150백만원×2개교)
 - 인건비 100백만원(50백만원×2개교)
 - 재료비, 여비 등 200백만원(100백만원×2개교)
 -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75백만원×2개교)
 - 인건비 50백만원(25백만원×2개교)
 - 재료비, 여비 등 100백만원(50백만원×2개교)
- 목조건축 교육활성화 사업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5년동안 4개 기관을 지정하여 기관당 연간 2.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전문교육기관: 4개 기관지정, 지원기간: 5년
 - 지원예산: 4개기관 × 2.25억원(교과목운영사업비(150백만원),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75백만원))
 -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 등을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8]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문교육기관(a)	4	4	4	4	4	-
지원단가(b)	230	234	239	244	248	-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a×b)	918	936	955	974	994	4,777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조건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4,200만원, 2030년 13억 4,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4억 6,100만원(연평균 12억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18	18	18	18	18	92	18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안 제10조)	306	312	318	325	331	1,592	318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안 제11조)	918	936	955	974	994	4,777	955
합계	1,242	1,267	1,292	1,317	1,343	6,461	1,292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2025년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개요

산림청 제출자료(2025)

- (목적)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기반 확대
- (근거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산림청고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산림청고시)」
- (사업기간) 2016년 ~ 계속
- (주요내용)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학원의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관련 연구 지원
 - (지정 및 지원기간) 5년(운영규정 제4조)
 - －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기간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신규지정 신청 가능
 - (지정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법률 제30조)
 -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관련 교과목 개설,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지정기준 별표 1, 2), 인력(시행령 제26조) 보유
 - (지원금액) 1개교 당 연간 225백만원
 - (평가 및 환류) 사업수행 결과 연차·중간평가(3차년도)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신규 참여 제한
 - － (평가항목) 전문인력 양성실적, 연구논문 게재실적,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사업 목표 달성 현황 등

- (예산) 450백만원(2개교, 1개교 당 225백만원)
- (전담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지정 및 지원 현황) 3개교(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 지원현황]

지정기간	제1기 (2016.3.7.~2020.12.31.)	제2기 (2021.3.1.~2025.12.31.)	제3기 (2023.7.3.~2027.12.31.)
지정대학원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금액	총 750백만원 * 연간 150백만원	총 1,050백만원 * 1~2년차 연간 150백만원, 3년차 연 300백만원, 4~5년 차 연 225백만원	총 1,050백만원 * 1년차 연간 150백만원, 2~5년차 연간 225백만원